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78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최보운 · 김선교 · 김상훈
이성권 · 이달희 · 김성원
주호영 · 김 건 · 조배숙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taxi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u> <u>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u> <u>조 사업</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